성주군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1. 제 안 자 : 성주군수

2. 개정이유

「지방자치법」이 개정되어 2022년 1월 13일 시행예정으로 주민의 감사청구에 대하여 개정된 사항 중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자 함

3. 주요내용

가. 개정된「지방자치법」제21조제1항에 따라 주민의 감사청구를 위해 연서하는 주민의 연령과 수를 개정 (안 제2조)

1) 연서주민 연령 : 19세이상 → 18세 이상

2) 연서주민 수 : 200명 → 150명

4. 참고사항

○ 관계법령 :「지방자치법」

○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○ 규제심사 : 해당없음 [미래전략담당관-3770(2021.11.15.)호]

○ 성별영향평가분석 : 개선사항 없음 [가족지원과-47326(2021.11.11.)호]

○ 입법예고 : 의견없음(2021. 11. 22. ~ 12. 12.)

5. 검토의견

○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라 주민감사청구를 위한 연서주민의 연령과 수를 변경하는 것으로,

○ 감사청구를 위한 연서주민의 연령을 19세 이상에서 18세 이상으로, 연서주민의 수를 200명에서 150명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.

○ 법리 검토결과, 관련 상위법령에 위배되지 않고 자치법규 입안 심사 기준에 합당하며, 주민감사청구 활성화를 위해 본 조례를 개정·시행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.